

우리나라에서는 발생 또는 유행 즉시 방역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‘제1군 전염병’으로 지정하고 있으며, 이 균의 조기 발견을 위하여 E. coil O157:H7의 감염증 발생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E. coil O157:H7 감염 의심 환자는 관할 보건소에 발생사실을 즉시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.

■ **어떻게 하면 병원성 대장균에 의한 식중독을 예방할 수 있나요?**

병원성 대장균은 사람, 동물과 우리의 생활주변에 널리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위생을 항상 청결히 하고, 음료수 및 식품은 충분히 가열 후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방법입니다.

특히 인체 위험성이 높은 E. coil O157:H7을 예방하기 위해서는, 식품을 조리하거나 가공할 때 위생적으로 취급하고 균의 특성상 열에 약하므로 오염이 우려되는 식품은 충분히 가열하는 것이

중요합니다. 또한 육류와 분쇄육 등은 중심부 온도 75℃ 이상에서 1분 이상 충분히 익혀야 하며, 육류와 내장은 분리된 용기에 담아 보관해야 합니다. 살균 기능이 있는 비누(역성비누) 또는 알코올 등 소독제에도 쉽게 사멸되므로 식품을 취급할 경우 손과 조리 기구를 충분히 씻어야 하며, 음료수의 위생관리에 도 힘쓰도록 해야 합니다.

※ 본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2007년에 발간한 “유해물질총서” 및 식품의약품안전청 “식중독예방 대국민 홍보사이트” 등의 내용을 기초로 작성 하였습니다.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고 싶으시면 위해예방정책국 홈페이지([www.foodwindow.go.kr](http://www.foodwindow.go.kr)) 전문정보 및 식중독예방 대국민 홍보사이트(<http://fm.kfda.go.kr>)에서 관련 자료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.

**관세청, 통관단계에서 원산지표시 위반물품 과징금부과 등 단속 강화**

관세청은 원산지 허위·오인표시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하여 8월부터 단속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.

○ 특히, 관세청에서는 시중유통은 물론 통관단계에서 적발된 원산지표시 위반 물품에 대하여 최대 3억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중에 유통중인 허위표시 물품은 리콜\*(보세구역 반입명령)을

시행하는 등 원산지표시 위반물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.

- \* 리콜(Recall)은 관세법상 의무불이행
  - 원산지표시부적정·상표권 및 지재권침해 물품중 수입통관 후 3개월이 내의 물품에 대해서 보세구역에 반입 명령하여 시정·말소·폐기·반송 등을 취하여 피해를 사전방지하는 소비자 보호제도임.

□ 이번에 관세청의 원산지표시제도의 주요 추진내용은,

- 통관단계에서 우범품목의 수입검사비용을 150%상향조정하며, 2회 이상 반복하여 원산지표시위반을 하는 경우 최대 3천만원('09.10.23일부터는 3억원)의 과징금을 부과하며,
- 전국 41개 세관의 먹거리 전담조사팀(167명)과 「원산지 국민감시단」(281명)은 67개 주요품목을 중점단속하고,

○ 원산지표시위반 적발시 재고물품은 물론 판매된 물품까지도 보세구역에 리콜을 실시하며, 장기적으로는 리콜대상기간을 확대(수입통관후 3월→6월)할 예정이며,

○ 별도로 수입하는 1회용 포장용기에 대해 한국산 원산지 표시를 허용하여 국내 제조 및 수출업체의 비용절감을 지원하고,

□ 관세청은 앞으로도 외국의 저급·불량물품, 오염된 먹거리 등 원산지 허위표시 물품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하여 소비자의 불안을 해소하고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국내산업 보호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 참고로 관세청의 금년 상반기 원산지 표시위반 단속 건수는 5,518건에 1,538억원입니다.